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 (단위: 만원)
가.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호	700
나.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호	10,000
다. 보험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·설립위원·이사·감사·검사인·청산인, 「상법」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(법 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배인(이하 “보험회사의 발기인등”이라 한다)	법 제209조 제6항제1호	2,000
라.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호	6,000
마. 보험회사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6항제1호	1,200
바.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호의2	6,000
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호	2,000
아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관청·총회 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4호	1,400
자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5호	1,400

<p>차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정관·사원명부·의사록·자산목록·재무상태표·사업계획서·사무보고서·결산보고서,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6호</p>	<p>1,400</p>
<p>카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57조제1항(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이나 법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7호</p>	<p>1,000</p>
<p>타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사원총회 또는 법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8호</p>	<p>2,000</p>
<p>파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9호</p>	<p>2,000</p>
<p>하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10호</p>	<p>2,000</p>
<p>거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11호</p>	<p>2,000</p>
<p>너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12호</p>	<p>2,000</p>
<p>더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13호</p>	<p>2,000</p>
<p>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14호</p>	<p>2,000</p>
<p>며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6항제15호</p>	<p>2,000</p>

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16호	1,400
서. 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2호	500
어. 법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2호의2	700
저. 보험회사가 법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1호	1,800
처. 법인보험대리점이 법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2호의4	1,000 다만,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커.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2항	6,000
터. 법 제92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3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퍼.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4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허.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2호	10,000
고.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6항제17호	2,000
노.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5호	1,0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도.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95조의2·제95조의5·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6항제18호	1,400

로.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6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모.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09조 제7항제7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보. 보험회사가 법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3항	5,000
소. 법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7호의2	700
오.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3호	6,000
조.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6항제19호	1,400
초.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9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코.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0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토.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. 다만,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09조 제1항제4호	6,000
포. 법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1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

		만원으로 한다.
호. 법 제101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1호의 2	1,000
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0호	2,000
누. 보험회사가 법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5호	10,000
두. 보험회사가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6호	10,000
루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1호	2,000
무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2호	2,000
부.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5항	1,000
수.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3	10,000
우.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4	6,000
주. 법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2호	700
추. 보험회사가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8호	10,000
쿠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3호	2,000
투.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9호	10,000
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4호	2,000
후. 보험회사가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0호	6,000
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	법 제209조 제6항제25호	1,400

경우		
느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6호	1,000
드. 보험회사가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·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0호의 2	10,000
르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7호	2,000
므.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1호	6,000
브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8호	1,400
스.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2호	5,000
으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29호	1,000
즈. 법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·공시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3호	700
츠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0호	1,000
크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1호	1,400
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2호	1,400
프.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6항제33호	2,000
호.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3호	10,000
기.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	법 제209조 제6항제34호	2,000
니.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·변경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	법 제209조 제6항제35호	1,400

등		
디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6호	1,400
리. 보험회사가 법 제131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4호	10,000
미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7호	2,000
비.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, 법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4호	1,0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시. 보험회사가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5호	10,000
이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8호	2,000
지.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5호	1,0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치.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·제179조·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6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키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39호	1,400
티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40호	1,400
피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법 제144조(법 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41호	2,000
히.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51조제1항·제2항,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42호	2,000

가.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9조 제7항제17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나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43호	1,400
다. 보험회사의 발기인들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209조 제6항제44호	1,400
라.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6호	5,000
마.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7호	5,000
바.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2호	3,000
샤.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	법 제209조 제1항제18호	5,000
야.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의3제1항,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9조 제4항제3호	3,000
자. 보험회사가 법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) 법 제185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) 법 제185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한 경우 3) 법 제185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4) 법 제185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	법 제209조 제7항제18호	700 700 700 700

<p>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</p> <p>5) 법 제185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</p> <p>6) 법 제185조제5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 경우</p> <p>7) 법 제185조제5항제7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한 경우</p> <p>8) 제96조의3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한 경우</p> <p>9) 제96조의3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		<p>700</p> <p>700</p> <p>700</p> <p>700</p> <p>700</p>
<p>챠. 법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,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8항</p>	<p>300</p> <p>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.</p>
<p>까.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</p> <p>1)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법 제1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,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주지 않거나,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</p> <p>2) 법 제18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</p>	<p>법 제209조 제7항제19호</p>	<p>700</p> <p>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</p> <p>700</p>

<p>7) 제9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경우</p> <p>8) 제9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경우(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)</p>		<p>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</p> <p>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</p>
<p>파. 법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·광고를 한 경우</p>	<p>법 제209조 제7항제21호</p>	<p>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</p>